

수리권 제도 세미나 소개

김 현 준 (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연구실 선임연구원)

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연구실은 지난 2월 6일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의 이상돈 교수와 부산대학교 법과대학의 천병태 교수를 초빙하여 수리권 제도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.

이상돈 교수는 “우리 나라 및 미국, 이스라엘의 수리권 제도”에 대해서 발표하였고 천병태 교수는 “일본의 수리권 제도”에 대해서 발표하였으며, 세미나 자료로서 “수리권 제도”라는 책자를 배포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. 수리권 서설

■ 물과 수리권

- 자원으로서의 물

- 수문 순환 과정에 있는 물 중에서 사용가능한 것
- 비싸지 않으면서도 대량으로 사용되고, 공공재이면서도 재생가능

- 물에 대한 법적 접근

- 이스라엘 : “국가의 수자원은 공공의 재산으로서 국가가 관리하며, 주민의 이용이나 국가의 발전을 위해 이용되어야 한다”

- “수자원이란 용출수, 유수, 하천, 호수, 기타의 수류, 저수를 가리키며 그것이 지표에 있건 지하에 있건, 천연상태로 있건 관리되고 있건, 인공적이건 간에 모든 상태의 물을 의미한다”

- 영국 : 수자원의 범위를 하천과 호수 등의 지표수와 지하수를 모두 포함하여 당해 구역 내에 존재하는 모든 공급원이 되는 물

- 독일 : 상시 또는 일시로 하상을 흐르거나 또는

정체하고 있는 물, 또는 지하수를 대상

- 러시아 : “러시아의 수자원은 국가만이 소유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다. 수자원에 관한 국가 소유권을 직접 또는 비밀리에 침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”

■ 우리 나라의 물 분쟁

- 제천-영월 간 취수 싸움
- 옥정호 수리권 조정 사건
- 금호강 길안보 사건
- 용답댐 건설 반대 사건
- 황강 취수 분쟁
- 춘천시-수자원공사 간 물값 분쟁
- 위천공단 문제

■ 물 분쟁의 원인

- 피해지역과 수혜지역이 공존하는 구조
- 수자원 여건의 변화
- 지방자치 실시에 의한 물 소유권 주장
- 물 분쟁을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

■ 물 분쟁의 원인으로서 수리권 제도

- 현행 수리권 제도의 모호성
- 유지용수, 도시생활용수, 산업용수 및 농업용수 간의 우선순위에 따른 물 배정
- 동일 목적의 용수 수요간의 우선순위 문제
- 기존의 물 사용자에 대한 보상 문제

■ 수리권 제도 개선의 문제

- 수리권은 그 법적 지위가 매우 모호한 상태
- 민법이 인정하는 수리권과 하천법, 다목적댐법 등 특별법이 인정하는 수리권이 조화를 이루지 못함.

2. 우리나라의 수리권 제도

■ 수리권의 의의

- 실정법상으로는 수리권의 의의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명문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이 없다.
- 하천법 제 25조에는 [유수의 점용허가]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이른바 許可水利權이 주어지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고, 하천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유수 점용을 하고 있었던 자에게는 관습상의 用水權으로서 이른바 慣行水利權(주로 농업용수의 이용)이 인정되어 양자가 구분되고 있다.
- 토지수용법 제 2조 2항 3호에서는 「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」로 표현하여 이 권리의 수용 또는 사용의 경우에 토지수용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.

■ 민법상의 수법관계 개관

- 민법의 관련조항과 법원
- 相隣關係에 관한 규정 가운데 제 221조부터 236 조의 16개조
- 종래의 관습법에 기초하여 성문화시킨 공유하천 용수권 등을 제외하고는 구민법상의 규정을 답습한 것
- 이들 규정만으로는 수법관계를 전부 규율할 수 없기 때문에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및 판례 그리고 하천법과 같은 특별법 등이 수법 관계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.

• 관습상의 권리로서의 용수권

- 공유하천용수권은 구민법상에는 규정이 없었으나 오랜 세월동안 관습적으로 형성된 권리로서 판례에 의해 인정되어온 권리를 우리 민법전에 민법상의 권리로 규정

■ 수리권의 법적 성격

- 공권인가 사권인가?
 - 하천법 제 25조 제 1항 1호는 하천 「유수의 점용」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
 - 公權說 : 이는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의 수리권의 법적 성질을 공권으로 보는 견해인데, 주로 공법학자들이 주장
 - 私權說 : 사권설은 사법학자가 주로 주장하는 견해
 - 折衷說 : 공유하천용수권은 민법상에 규정되어 민법의 규율을 받는다는 점에서 사권의 성격을 가지는 한편, 그것은 공유하천에 대한 권리이며 하천법 및 공유수면관리법과 같은 공법의 규율을 받으므로 동시에 공권으로서의 성질도 갖는 이중적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.
- 수리권은 독립된 재산권인가?
 - 상린권설
 - 독립재산권설

■ 수법체계상의 분류

- 영미법계 : 1)수로를 가진 지표수 2)지소의 지표수 3)원천수 4)수로 없이 확산되는 지표수 5)지하수
- 대륙법계 : 1)수로를 가진 지표수 2)지하수 3)수로 없이 흐르는 지표확산수
- 민법 : 제 221조에서 제 236조까지의 16개조에서 수법관계에 관하여 규정(대륙법계)
- 수로를 가진 지표수의 법률관계
- 지하수의 이용관계
- 수로없이 확산되는 지표수의 법률관계

3. 주요 외국의 수리권 제도

■ 미국

- 미국의 수리권 제도
 - 연안권(riparian rights) : 뉴욕, 미주리, 버지니아, 플로리다, 알라바마 등 동부의 29개 주
 - 선점권(appropriation) : 서부의 알래스카, 아리

조나, 콜로라도, 아이아호, 몬타나, 네바다, 뉴멕시코, 유타, 그리고 와이오밍 등 9개 주

- 중간 형태(hybrid system) : 캘리포니아, 캔사스, 미시시피, 네브라스카, 노스 다코다, 오클라호마, 오레곤, 사우스 다코다, 텍사스, 위싱턴의 10개 주

- 수리권 법제의 동향

- 제2차 세계대전 후 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연안권에 대한 수정

- 각 주는 물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, 허가제(permit system)를 통해 물을 배분하는 제도를 도입

- 지하수 : 다른 토지소유자에 피해를 주지 않고 물의 이용목적이 합리적인 한도 내에서 지하수를 사용

- 문제점 :

① 지표수와 지하수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지 못함

② 수리권자간 상호간에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와 기준이 없다

- 수리권 관광 행정기구

- 도시용수 : 18세기 말 민간기업 등장, 오늘날 공공수도사업자와 민간수도업자는 미국 전체의 생활용수 및 상업용수의 80%를 공급하며 산업용수의 20%를 공급, 미국 전체 물 공급의 85%는 공공사업자

- 농업용수 : 상호회사(mutual) 서부의 관개지역에 20% 이상의 물을 공급

- 연방정부 : 1902년에 개간법(Reclamation Act)을 제정, 내무부에 개간국(Bureau of Reclamation)이 설치, 300개의 댐과 7000마일의 도수로가 건설

- 각 주 : 주정부는 대체적으로 2차적 역할만을 담당

■ 일본

- 일본의 수자원

- 國土廳水資源局(1983) : [日本의 水資源]이라는 수자원백서를 간행 수자원 : [강수량에서 증발하여 없어지는 양을 뺀 양이 이용가능한 것]

[실제로 水資源으로 이용가능한 양은 갈수인 낸도의 부존량의 6할 정도인 약 2,000억m³가 추정된다]

- 하천법상 수리권

- 河川法 : 1964년 제정, 1997년 개정

- 실정법상에는 [水利權]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, 하천법 제 34조에 의한 流水占用許可를 받게되면 이로서 수리권이 부여된다고 해석

- 관행수리권 인정 : 하천법의 시행 또는 그 적용이나 준용 이전부터 유수의 점용이 인정되고 있었던 자에게는 새로운 허가없이도 水利權이 인정

- 하천과 이에 따른 하천관리시설을 국가의 소유로 하고, 그에 준하는 河川의 流水도 원칙적으로 국가의 소유

- 하천관리의 적정을 기하고, 공공의 안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기본원칙은 公共性과 合理性에 입각한 물 利用原則을 바탕으로 한 국가관리의 流水占用許可制度를 채택

- 河川管理 및 水利權調整에 국가가 강력한 권한을 가지며, 수리권의 신청을 전제로 한 국가의 승인이나 허가로써 水利權이 성립

- 물 행정의 종합조정기법

- 水資源開發促進法에 근거한 内閣總理大臣의 調整權 : 水資源開發水系의 指定, 水資源開發基本計劃, 水資源開發審議會는 국토청에 설치되어 내각총리대신의 자문에 응하고 수자원개발수계 및 수자원개발기본계획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조사·심의

- 제정(裁定)방식 : 복수의 관계자에 대한 이해조정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한 최후의 단계에서 일정한 행정주체가 권한을 가지고 이를 조정하는 방식

- 협의(協議)방식 : 복수의 행정주체, 관계자가 상호 협의를 함으로써 조정

- 이해조정의 기준 : 기득권존중 기준, 피해자보상기준

- 수자원의 확보와 실정법

- 하천법(1964년)

- 국토종합개발법(1950년)

- 국토조사법(1951년)

- 특정다목적댐법(1957년)

- 수자원개발촉진법(1961년)

- 수자원개발공단법(1961년)

■ 일반기사

수리권 제도 세미니 소개

- 수원지역대책특별조치법(1971년)
- 물행정청을 설치 주장 : 수자원 및 물행정의 소관 청이 분산된 것을 통합

■ 이스라엘

- 이스라엘의 수법
- 1959년에 제정, 8차례에 거쳐 개정
- 이스라엘 내의 수원(sources of water)은 공적 재산(property of the public)이고 국가의 통제에 속하는데 (1조), 여기서 말하는 수원은 하천, 샘, 호수 등 여하한 형태의 지표수와 지하수를 뜻한다.(2조) 개인은 수법의 규제 하에서 물을 얻어서 사용할 수 있다. (3조)
 - 이스라엘 수리권의 특징
 - 국가차원의 강력한 물 관리
 - 개인이 토지를 갖고 있다해서 연안권이나 선점권이 인정되지 않음. 고갈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정부 규제하에 물을 사용
 - 물에 관한 규제권한은 농업장관에 속함.
 - 물에 관한 규제 기구 : 물 위원회(Water Council), 물 심사관(Water Commissioner), 물 기구(water authority), 물 법원(Water Court)
 - 갈수기에 대한 대책 : 제한 급수시 공급 순위와 공급량을 농업장관이 관장

4. 수리권 제도 개선 방향

■ 우리나라 수리권 제도의 문제점

- 개설
- 우리 나라의 수리권은 民法과 河川法 多目的댐法 등 특별법에 규정
 - 우리 나라의 수리권에 대한 해석은 민법 자체 내에서도 합의를 이루는 합리적 해석론을 찾아보기 어려울 뿐더러 하천법 등 특별법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론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음
 - 수리권에 관한 민법적 해석
 - 公有河川用水權은 상린권
 - 기존 용수권자에 대해 우선권을 인정하는 독립한

재산권

- 관행수리권
- 수리권과 관련된 특별법 조항
 - 하천법 : 하천에서 취수하는 것을 許可制로 하고 있음(허가수리권) 허가수리권은 공용이나 공공용이 아닌 한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, 공익의 필요에 의해 취소 변경
 - 특정다목적댐법 :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리에 관하여 하천법의 특례에 관한 사항 및 수몰이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목적 댐의 건설을 촉진하고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 이용하는 것을 목적
- 민법상 수리권과 특별법상 수리권의 비교
 - 민법상 수리권 : 내용 자체가 불분명, 수리권의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음
 - 특별법상의 수리권 : 하천법상의 수리권은 허가에 의해 부여되는 許可水利權

■ 우리나라 수리권 제도 개선방안

- 수리권의 단일화 방안
 - 민법과 하천법의 괴리 : 우리 나라의 수리권은 민법상 공유하천용수권과 하천 법상의 하천 유수점용권으로 구분. 이들 수리권은 통상 관행수리권과 허가수리권이라고 부르는데 관행수리권은 그 내용과 요건이 모호해서 문제가 많다.
 - 민법은 과거의 관행수리권을 공유하천용수권으로 수용하였음에도 물에 관한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고 또 규정함으로써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. 하천법은 이 같은 민법상의 수리권을 기득권으로 인정함으로써 스스로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.
 - 관행수리권이라 부르는 민법상 공유하천용수권을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.
 - 민법에서 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새로운 법(예를 들자면 물 기본법)에서 필요한 조항을 규정
 - 수리권에서 '물 관리 제도'로
 - 국가 관리의 물 허가제 : 수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制度의 문제
 - 각 수계별로 물에 관한 현황이 철저하게 파악

-
- 지표수와 지하수의 통합관리
 - 근거 법률에 허가의 조건, 허가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, 허가시에 관리청이 부가할 수 있는 부관 등에 관한 사항
 - 갈수기나 여건의 변경으로 인해 물을 전용할 수 있는 장치
 - 수자원관리 체계의 확립
 - '물 관리기본법'을 제정하여 수자원 개발 관리를 일원화
 - 물 배분과 물 분쟁
 - 기득 수리권을 전부 인정 : 새로운 수요에 대한 형평성 문제
 - 갈수기 물 배분 문제 : 공급위주의 물 정책 지양. 댐 적지도 고갈, 생태파괴 문제가 심각. 수요관리 통해 물 사용을 통제
 - 갈수기 물 공급 우선순위에 대한 적정성
 - 물 분쟁 처리 장치 도입
- 결 론
- 수리권은 개인의 기득권이 아니라 국가 물 관리 정책에 따라 개인에 주어지는 혜택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.
 - 현행 민법상 수리권은 물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 맞지도 않고 모호해서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.
 - 하천법은 기득 수리권을 지나치게 보호하고 있어서 물 부족 현상이 우려되는 현 시점에서 볼 때 문제가 많으며 분쟁해결 장치 등이 미흡하다.
 - 각개의 목적에 따라 분리되어 있는 수량 관리를 통합하고 물의 배분에 있어 형평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절실하다. ●●●